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최판술 의원 외 32명

나. 의안번호 : 제914호

다. 제출일자 : 2015. 11. 26.

라. 회부일자 : 2015. 11. 30.

2. 제안사유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개정¹⁾으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유통의 건전성과 시민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법 제5조를 위반하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시행일 : 2016.2.12>

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포함함(안 제3조)

나. 위 ‘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 및 별표1)

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마련함(안 별표2)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5.12.3 ~ 12.10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원안 동의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개정으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대포차에 대한 운행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등록관청의 직권 말소등록’, ‘등록번호판 영치’, ‘처벌규정 신설’,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2015년 8월 11일에 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2016년 2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조례안은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에 미등록한 채 자동차를 운행한 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통해 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등의 대포차 운행 및 유통에 대해

공무원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대포차

운행 근절과 자동차 유통의 건전성 확보 및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참고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포차”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2), 제80조제5호의33), 제81조제2호4), 제81조제7호의25)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시행일 : 2016.2.12)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각 위반 사항에 대해 15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 조례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및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30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10~20만원과는 비슷한 수준임

2)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4)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포상금 금액이 과다할 경우 과파라치 양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과소할 경우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 필요성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관련 신고포상금액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이 대포차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통해 대포차의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동의’ 의견⁶⁾을 제출하였음

6) 교통정책과-34595(2015.12.14.)